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

(안 제8조의6 조문제목 개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표 3의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 및 별표 4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으로 구분함(안 제8조의6제1항)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의6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공카드 30만장 구입예산 15억원
확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등 7개 보훈관계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등록증 받
급대상자 포함)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이전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의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를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2”를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①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3의 국가보훈등록증
2. 별표 4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어 이용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위해 이동통신단말기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장치의 유효기간,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

시스템의 운영 위탁,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6(<u>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u> <u>에 대한 확인서</u>) <신 설>	제8조의6(<u>국가보훈등록증 등</u>) ① <u>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총</u> <u>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u> <u>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 <u>별표 3의 국가보훈등록증</u> 2. <u>별표 4의 모바일국가보훈등</u> <u>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u> <u>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u> <u>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u> <u>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u> <u>치되어 이용될 수 있는 국가</u> <u>보훈등록증을 말하고, 이하</u> <u>“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라</u> <u>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u> <u>증 발급을 위해 이동통신단말기</u> <u>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u> <u>장치의 유효기간, 발급 및 관리</u> <u>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위</u> <u>탁,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u> <u>보훈등록증 신청 등에 관하여는</u>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u> <u>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u>
<신 설>	

<u>영 제15조의2</u>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8호의8 서식에 따른다.	<u>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③ <u>영 제15조의2제3항</u>----- ----- ----- ----- -----.
--	---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6제1항제1호 관련)

(앞면)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뒷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국공립 고궁·능원, 국공립 공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

QR

세부내용
QR참조

※ 주소, 신상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 (주) 1. 앞면 상단의 “(국가보훈대상자 구분)”에는 고엽제대상자로 기재합니다.
2. 앞면 하단의 “(경합 등록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또는 “(대상구분)”
에 기재되는 보훈등록 사항 이외 경합 등록된 내용을 기재한다.
- 경합 등록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되지 않는다.
3. 고궁·공원 등 감면 대상 국공립 시설물 및 감면비율의 세부내용은 뒷면 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국가보훈등록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미세문자, 색변환 잉크, 형광, 레인
보우인쇄, 선화인쇄 등의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다.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
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이 포함된 경우에는 앞면 좌측 하단에 기호(🇰🇷)
를 표시한다.

86mm×54mm[폴리염화비닐(PVC) 980.4g/m²]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6제1항제2호 관련)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 (주) 1. 상단의 “(국가보훈대상자 구분)”에는 고엽제대상자로 기재합니다.
2. 하단의 “(경합 등록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또는 “(대상구분)”에 기재되는 보훈등록 사항 이외 경합 등록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경합 등록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신청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단, 신청인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어야함)		
신청 구분	[] 발급 []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	[] 희망 [] 불희망
신청 사유	[] 분실(분실일자:) [] 훼손(훼손일자:)			
	[] 증 기재내용 변경(대상구분, 보훈번호, 상이등급, 성명, 생년월일 등 변경) [] 기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사진 1매(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사진)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연번	관리 (지)청	접수 번호	발급 일자	발급대상자				증구분	신청구분	수령인	모바일증		비고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발급여부	발급일자	